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511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5.

발 의 자 : 이주영・이준석・천하람
박준태・윤재옥・김선민
조은희・김미애・황명선
주호영・이진숙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, 복지, 보호, 교육,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. 현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에는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나, 신체활동 지원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(2023년 기준 13.4%)은 미국 청소년(46.3%)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.9%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하며, 10대 아동의 비타민D 결핍률은 약 70~80%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야외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이에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야외활동을 지원할

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6 및 제37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50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6(보호대상아동의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지원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지원의 대상, 내용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야외활동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야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야외활동 지원의 대상, 내용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5조의6(보호대상아동의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지원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지원의 대상, 내용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<신 설>	제37조의2(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야외활동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야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	② 제1항에 따른 야외활동 지원의 대상, 내용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